

●속초시 공고 제2020-884호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,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(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)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4일

속초시장

1. 공고명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(명부 작성)
2. 안전점검 수행 대상 :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
3. 참가자격(모두 해당)
 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(안전진단전문기관(건축)[업종코드(1397)]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(종합)[업종코드(4963)] 등록한 업체)
 - 강원도, 서울특별시,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(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)
4. 모집기간 및 방법
 - 접수기간 : 2020. 8. 24.(월) 09:00 ~ 2020. 9. 14.(월) 18:00 (22일간)
 - 제출장소 : 강원도 속초시청 도시안전국 건축과(2층) (☎033-639-2769)
 - 등록명부 공고 : 2020. 9. 21.(월) (속초시청 홈페이지 sokcho.go.kr - 고시공고)
 - ※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 접수방법
 - 건축과 방문접수(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)
 - 우편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이메일 : jh1029@korea.kr
 - *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바랍니다.
 - * 이메일 접수 시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- 제출서류
 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(붙임 1)
 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(붙임 2)
 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
 -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
 -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 -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USB 1개.(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)

5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지정결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모집기간 및 방법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일 경우 지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명부에 지정(작성)하며,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.
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- 등록명부는 속초시 인·허가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·적용 될 수 있습니다.
-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축과(☎033-639-27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2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 끝.